

第53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1月17日(金) 11時 05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월동기 제설대책 보고 청취의 건

附議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4. 월동기 제설대책 보고 청취의 건(金正大議員 外 4人 發議)8面

(11時05分 開議)

○議長 金憲中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3회 임시회인데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전원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議長으로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자유롭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3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전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 06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玄壽漢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현수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처리하여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종로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고 있어 그 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500원을 징수하는 안건으로 이는 주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권한 중 일부가 구청장에 위임된 내용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중전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고 의원이 직무상 손해나 장애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후 사망이나 장애가 되었을 경우는 다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원에 관한 내용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11. 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1월 1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디프테리아 긴급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건강보호를 위해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유료)을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독립국가연합 등 디프테리아 유행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이상 성인에 대한 디프테리아 임시 예방접종(유료 : 500원)을 실시코자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이유)

-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고 있어 동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되어 동접종 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

(개정골자)

- 보건소수가조례 중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규정한 제2조제2항 별표에 아래 사항을 추가함.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3. 유료접종	사. 디프테리아	0.5ml	500원

〈관계법규〉

〈전염병예방법 제2조(전염병의 종류)〉

제1종 :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부스, 디프테리아, 파라티보스, 황열, 세균성 치질

제2종 : 백일해, 말라리아, 홍역, 공수병, 파상풍 등

제3종 : 결핵, 성병, 나병, 만성 B형간염

〈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육·해·공,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소법 제8조(수수료)〉

-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침('95. 8.28)〉

- 유행지역 : 독립국가연합 전역 및 인근 지역
- 환자발생 : 4만7,802명(사망률 23%)
- 접종수수료 : 500원
- 접종증명서 발행 : 담당의사가 영문으로 발행
- 접종약 배정 : 약 200명분
- 민간시설 접종 : 강북삼성병원(구 고려병원)

〈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 ②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검토의견〉

- 디프테리아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16세 이하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 그 이상자에 대하여는 종전까지는 발생사항이 없어 유료접종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수가조례가 없었던 사안으로
- 금번 수가 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 : 안철주, 홍승태, 박문배, 정창희 위원)

- 디프테리아 접종 원가는?
- 무료 접종할 용의는?
- 200명분의 접종약이 부족할 경우는?
- 접종시 수수료 500원에 대한 원가 기준은?
- 구 관내 디프테리아 발생 환자 여부는?

-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여부는?

(답변자 : 보건소장 이성세)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불가합니다.
- 부족분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입니다.
- 없습니다.
-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5. 討論 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현수한 위원장, 홍기서 간사, 안철주, 오금남, 천상욱, 심재득, 박문배, 박종식, 정창희, 홍승태, 정태순위원)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審 査 報 告 書

1995. 11. 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1월 1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김현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95. 6.20)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

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를 포함시켜 구청장이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3. 専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이유)

○ 시장권한 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종전 5가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권한위임된 1개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

(개정골자)

○ 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과태료 처분대상 중 다음과 같이 개정

종 전 (일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4호, 7호)	개 정 (일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5호, 7호)
1. 폐기물 무단투기(법 제7조)	1. 종전과 같음
2. 분리수거 미이행(법 제15조)	2. "
3. 배출시설 설치의무위반(법 제16조)	3. "
4. 허가업자의 부담요금 징수(법 제17조)	4. "
7.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대장 기록보존 미이행(법 제41조)	5. (추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미이행(법 제20조3항)
	7. 종전과 같음

* 6호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대장 기록보존 미이행(법 제24조3항)-미위임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 특정폐기물: 환경처장관 허가(법 제2조)

－ 폐유, 분진, 폐석면, 폐농약 등

○ 일반폐기물: 구청장 허가(법 제17조)

－ 특정폐기물 이외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일반폐기물 처리)〉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특정폐기물 처리)〉

①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총리령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3. 압축 및 폐쇄시설
4. 퇴비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무단투기
2. 제15조 제2항의 규정 위반자.....분리수거 미이행
3. 제16조 제2항의 규정 위반자.....배출시설 설치의무위반
4.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부담요금 징수
5. 제20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

.....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6. 제24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기록보존 미이행

7. 제41조 규정 위반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기록보존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58조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과태료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위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95. 6. 20)

다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처리시설의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5항(처리시설의 개선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6항(처리시설의 폐쇄명령)

5. 검토의견

- 1995년 6월 20일자 시장 권한의 위임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 : 박문배, 천상욱, 오금남, 박종식, 홍기서, 천상욱, 정창희 위원)

- 폐기물 분리수거 불이행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사례는?

- 주요골자 중 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특정폐기물에 관한 위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충되는데?

- 무단투기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매립, 소각, 폐쇄시설이 구 관내에 있는지?

- 구 관내 대행업체의 수는?

- 특정폐기물에 대한 단속은?

- 무단투기물에 대한 처리는?

(답변자 : 시민국장 김현식, 청소과장 강한수)

- 964건에 6,8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미이행은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 무단투기는 종류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부소각장에 몇군데 있습니다.

-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무단쓰레기에 며칠간 스티카를 부착하여 주민의 경각심을 제고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5. 討論 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현수한 위원장, 홍기서 간사, 안철주, 오금남, 천상욱, 심재득, 박문배, 박종식, 정창희, 홍승태, 정태순위원)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11. 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1월 1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97. 7. 1 공포(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상해등보상금 지급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도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 본문에 후단 신설)

○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배경)

○ '95. 7. 1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종전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바뀐에 따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고

○ 또 종전에는 의원이 공무로 사망, 장애, 상해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중복하여 줄 수 없던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나 상해가 사망이나 장애가 되었을 경우는 새로이 사망이나 장애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개정골자)

○ 제2조와 제4조 중 '일비'라는 자구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고

○ 제4조제1항 후단에 다음 규정을 신설함
『즉 상해나 장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새로이 지급하되 그 금액은 상해나 장애로 기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의2(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각호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단서규정)

(신법)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95. 7. 1 개정)』

(구법) 『다만 다음각호의 비용은 서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종로구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보상기준)

• 시행령상 기준액과 동일함

○ 종로구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제8조(보상심의회)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의회의원 1인(안철주의원)

— 구청 관련 국장 1인

— 의무직 공무원 1인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법률 제10조(상해, 사망)

•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 국회의원 수당규정 제3조 (수당 등)

수	당	2,042,000원(월액)
—	입법활동비	1,450,000원(")
—	특별활동비	435,000원(")

(검토의견)

○ 19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단서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 단서규정의 신구법 비교

구 법	신 법
다만 다음각호의 비용은 서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위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단서규정은 사망, 장애, 상해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해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이나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 이를 개선하여
- 상해나 장애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후 사망이나 장애가 되었을 경우는 다시 장애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사망보상금이 국회의원(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은 2,450만4,000원(204만2,000원×12월), 국회의회의원은 1,440만원(720만원×2)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2호에서의 상해치료비로 장애보상금 지급기준(7,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 등은 점진적으로 법 개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 박종식 위원)

- 공무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시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 의원의 상해시 7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할 용의는?

(답변자: 총무국장 오병한, 기획예산과장 윤수현)

-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모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5. 討論 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현수한 위원장, 홍기서 간사, 안철주, 오금남, 천상욱, 심재득, 박문배, 박종식, 정창희, 홍승태, 정태순위원)

○議長 金憲中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동기제설대책 보고청취의 건(金正大議員 外 4人 發議)

(11時 17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4항 월동기 제설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李炯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 그리고 홍승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은 계절을 맞이하여 조석으로 제법 한기까지 느끼게 하는 쌀쌀한 날씨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다가올 월동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 관내 취약지역 및 주요도로 결빙 등 설해요인을 어떻게 신속히 제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수립한 자체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김정대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월동기 제설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설대책 기간은 '95. 11. 15부터 '96. 3. 15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추진하며 인원은 59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로는 제설차 및 덤프트럭 등 88대를 보유하고 관내 취약지역 38개 소를 선정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 자재를 비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며 더불어 구청 관계공무원에게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월동기제설대책 보고청취의 건 結果報告書

1995. 11. 1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1월 13일
김정대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년 11월 1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손장우)

가. 제안이유

- 강설시 우리 구 관내 취약지역 및 주요 도로 결빙 등 설해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 자율참여 유도-대중교통수단 이용, 적설대비 장비휴대, 내집(점포)앞 내가 쓸기
- 초동제설 대책 강화
 - 강설 전 작업 착수
 - 취약지점 및 간선도로, 고개길 등
-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 취약지점-고개길, 교차로 등
 - 취약시간대-출·퇴근시간, 심야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이병문 위원, 나재암 위원, 선상선 위원)

- 자하문터널(입구)에서 청운동 방향 및 사직터널에서 금화터널 고가 입구까지 제설작업이 잘 안되는데 그 이유는?
- 장비를 해당과에 배분했는데 소유는 어느과 입니까?
- 장비 보관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할 때 그 피해는 없는지요?

(답변자 : 토목과장 손장우)

- 제설차(유니목)가 2대로 많은 구역을 제설하고자 지연되는데 현재는 3대를 비치 제설작업에 열심히 하겠음.
- 제설차(유니목)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덤프 및 기타장비 일부는 토목과에서 관리함.
- 구청 파장, 토목과 창고 및 구청 후면에 보관함.
- 도로에 지장이 있음. 그래서 피해상을 논의되는데 대안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음.

4. 報告書 作成 參席委員

(이형술 위원장, 김정대 간사, 이병문위원, 선

상선위원, 김이환위원, 강래규위원, 나재암위원)

○議長 金憲中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委員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3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閉會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散會)

○出席議員 21名

金 憲 中	洪 承 台	安 哲 柱
李 炳 文	吳 錦 南	千 相 旭
玄 壽 漢	沈 載 得	鄭 泰 淳
李 炯 述	丁 昌 熙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正 大	宣 相 善	玄 孝 善
李 萬 魯	羅 在 岩	朴 鍾 植

